

예 산 총 칙

2018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80,052,000	14,401,560
일반회계	407,212,236	12,216,367
특별회계	72,839,764	2,185,193
공기업특별회계	26,377,767	791,33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6,377,767	791,333
기타특별회계	46,461,997	1,393,860
주택사업특별회계	12,100	363
의료보호특별회계	352,589	10,578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540,000	46,200
장학사업특별회계	9,496,264	284,88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100,000	3,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208,945	36,268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35,831	25,075
수질개선특별회계	32,131,868	963,956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특별회계	784,400	23,53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 "해 당 없 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조서] "해 당 없 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012,287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0,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